폐기물조치명령 이행 재촉구 공사송달 공고

「폐기물관리법」제48조 규정에 따라 불법투기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처분(조치명령) 촉구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(폐문부재)으로 송달이 불가하여, 「행정절차 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16일

광 주 시



1. 제 목 : 폐기물조치명령 이행 촉구 공시송달 공고

2. 근거법규 :「폐기물관리법」제48조

3. 공고기간 : 2020. 12. 16. ~ 2020. 12. 30. (14일간)

4. 공고방법 :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5. 공고대상자

| 성 명 | 주 소 | 반송일자 | 반송사유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니즈환경 니즈철거 채홍윤 |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6-8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만삼로 244번길 52 | 폐기물관리법 제48조(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) | 폐문부재 반송 |

6. 공시송달내용

- 광주시청 자원순환과-19294(2020.6.29.)호-26192(2020.9.3.)호 및 니즈철거 2020-003 (2020.8.28.)호 2020-002(2020.6.19.)호 관련입니다.
-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(폐기물 처리기준 등)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재촉구 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 전

달되지 않아 조치명령 하오니, 폐기물 처리 등 조치완료 후 즉시 증빙서류(사 진, 처리내역)를 첨부하여 자원순환과로 제출 바랍니다.

- 아울러 위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7. 문의 및 의견제출처 : 광주시 자원순환과 자원지도팀(☎ 031-760-4672)